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8 - 55 - 467호

안건명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피심인 (사)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사업자등록번호 : 107 - 82 - 6448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9길 38
대표이사 박상완

의결연월일 2018. 10. 12.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카드 가맹점과 카드 결제용 단말기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결제호 처리 시 부과되는 '대표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고, 관련 가입 신청서류의 교부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화면(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사실

(사)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신고일: '15. 1. 28.)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제공하여 가맹점의 시내·시외전화서비스를 매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금액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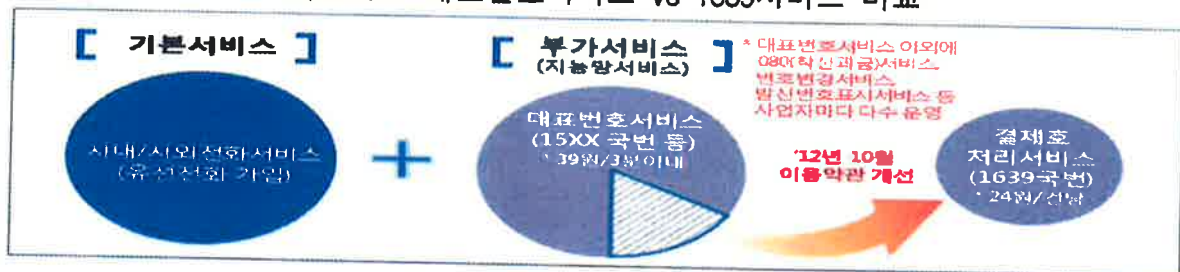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배경

시내·시의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형태의 지능망서비스인 '대표번호1)서비스(39원/3분, 부가세 제외)'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저렴한 '결제호처리서비스(24원/건당, 부가세 제외, 이하 '1639서비스'라고 한다)' 요금제가 '12년 10월 출시되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2)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18. 5. 15일부터 '18. 5. 16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2년 10월부터 '17년 12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번호서비스 및 결제호처리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가 없는지에 대해 관련 서비스 가입신청서, 협약서 등의 자료 분석과 담당자 인터뷰 등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참고 1 > 대표번호서비스 vs 1639서비스 비교



2. 행위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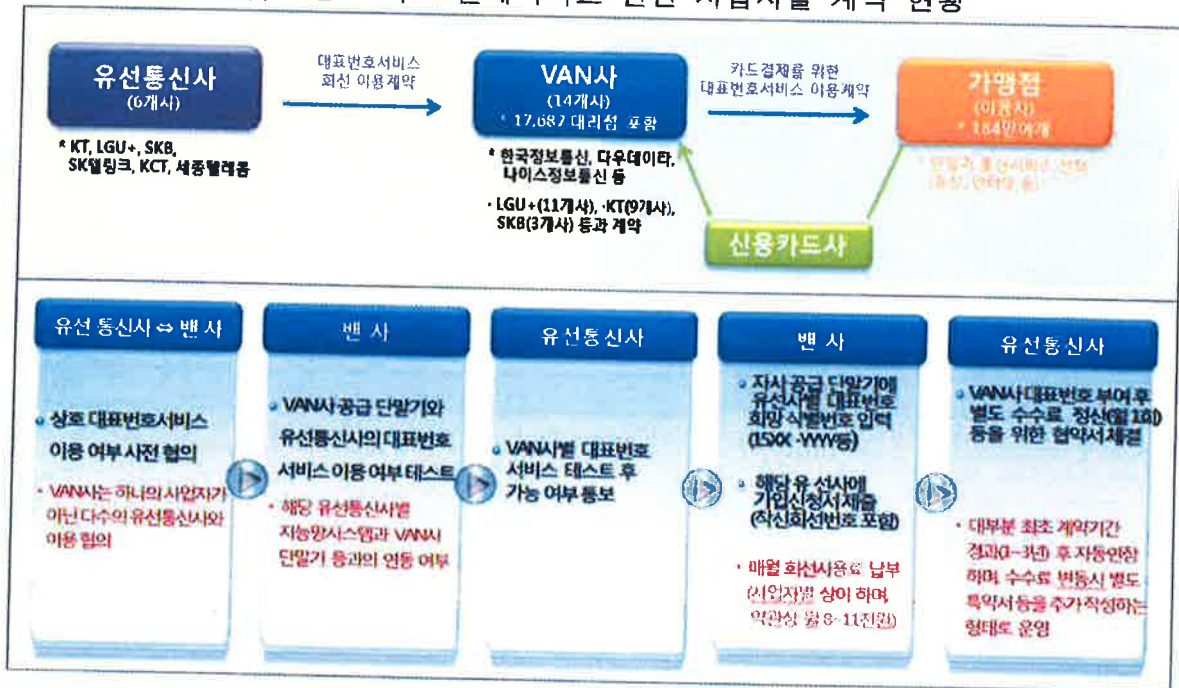
피심인은 카드 결제용 단말기 판매를 위한 대리점과 위탁(재위탁 포함)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카드 가맹점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17년 12월말 기준 대리점(재위탁 포함)3)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4)

1) '대표번호'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신자(이용자)의 전화를 실제 수신자(가입자 :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연결해 주기 위한 가상의 전화번호(1588, 1544, 1600 등)로, 회선이용 가입자는 월정액 회선이용료(예, 회선당 8천원~1만1천원 등)를 납부하고, 발신자(이용자)는 대표번호 이용 시 시내·시의 통화료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납부

2) "영세상인, 유선전화 카드결제 할인요금제 이용 0명...있는 줄도 몰라" ('18. 1.17, 서울경제) 등

할 때, 피심인과 계약되어 있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 관련 정보 조회 시에 발생하는 시내·시외전화서비스 기본요금 이외의 부가 서비스 형태인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통신요금(39원/3분, 부가세 제외)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 참고 2 > 카드 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자별 계약 현황



아울러, 피심인은 (주)엘지유플러스와 '16년 2월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벤(VAN)사업자와 다르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등의 대가로 (주)엘지유플러스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대표번호서비스가 설정된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카드 결제용 단말기에 통화연결 순위(예시- 1번 A통신사.....)를 설정하여, '17년 12월말 기준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4) 카드 가맹점과 임의의 가입 신청서(신용카드 단말기 POS장비 등 계약서) 등을 통해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없이 단말기 요금, 카드결제 관리수수료 등의 사항만을 안내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의2호 나목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바목은 약정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 다만, '16. 1.27일 이전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나목. 4)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대표번호서비스가 설정된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 카드결제를 위한 대표번호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이 시내·시외전화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처리 할 때 시내·시외전화서비스의 기본요금 이외에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통신요금으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의 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의2(나·바목) 【'16. 1. 27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제50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나목.4)】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IV. 시정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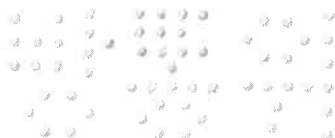
1.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카드 가맹점과 카드 결제용 단말기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결제호 처리 시 부과되는 '대표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고, 관련 가입 신청서류의 교부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화면(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 문서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카드 가맹점과 카드 결제용 단말기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이사 ○○○

4.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IV. 1. 내지 3.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행 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허 욱 (인) 

위 원 김 석 진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